경상북도경제진흥원 공고 2023100016호

2023년 포항시 신중년 중소기업·파트타임 지원사업 참여업체 모집 변경공고

포항지역 중년층 인력 취업장려 및 중소기업·소상공인 경영안정 도모를 위한 「2023년 포항시 신중년 중소기업·파트타임 사업」의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변경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시는 업체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.

2023년 10월 18일
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

※주요 변경사항

- 변경내용 : '중소기업 부문' 지원대상 **업종요건 완화**

기존 지원대상	변경 지원대상
제조 중소기업(공장등록증명서 보유)	**중소기업 요건 충족시 업종무관 신청 가능**
· 소상공인 부문 지원대상 기준은 기존과 동일 · 제조 중소기업 입증자료(공장등록증명서, 건축물관리대장) 제출 불필요	

1 모집개요

○ **사 업 명** : 포항시 신중년 중소기업·파트타임 지원사업

○ **추가모집기간** : 2023. 10. 18.(수) ~ 예산 소진시 까지

○ **지원대상** : 신중년(만40세 이상~만65세 미만) 인력을 신규 채용하는 포항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

○ 지원내용 및 규모

구분	지원 내용	지원규모
중소기업	• 채용인력 월급여의 40% 지원, 최대 월70만원 • 업체당 최대 3명 지원 • 지원기간 : 23.2.21. ~ 23.11.30.(최대 9개월)	지원금 : 126백만원 (20명 정도)
소상공인	• 채용인력 월급여의 60% 지원, 최대 월50만원 • 업체당 최대 2명 지원 • 지원기간 : 23.2.21. ~ 23.11.30.(최대 9개월)	지원금 : 228백만원 (51명 정도)

○ 절차 및 추진일정

절차	주요내용	일 정
추가 접수 및 선정	• 지원업체 상시 모집(**※사업비 소진시까지**) - 신중년근로자 채용 완료시 신청서 접수 • 참여 신청서 방문 및 우편 접수 • 신청업체 심사 및 선정 통보(수시)	'23. 10. ~ 11.
사전교육 및 사업시행	• 선정업체 대상 준수사항 및 지원금 청구 방법 안내 및 자료 배부 • 사업 시행	'23. 10. ~ 12.
현장점검 및 지원금 지급	• 사업기간 중 근로확인 등 현장 점검 • 업체별 지원금 지급(분기별) - 인건비 선집행 후 지원금 지급신청(업체→진흥원) - 제출증빙 적격시 지급	'23. 10. ~ 12.

2 세부 지원 내용

지원대상

가. 중소기업 지원대상

❍ 포항시 소재 기업으로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 및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2조에 해당하는 **중소기업** (※붙임1. 참조)

- 대상요건 충족시 업종무관 신청가능
- 사업자등록이 둘 이상인 법인사업자이라도 1건만 신청가능**(1기업-1지원)**

나. 소상공인 지원대상

❍ 포항시 소재 사업장을 둔 「소상공인기본법 제2조」에 해당 하는 소상공인

소상공인 기준 _ 근로자수 및 매출 기준 모두 충족

-근로자수 기준

광업, 제조업, 건설업 및 운수업	상시 근로자수 10명 미만
그 밖의 업종	상시 근로자수 5명 미만

-매출액 기준 :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의 업종별 매출액이 별표3(붙임2)에 부합
(숙박 및 음식점업:10억원 / 도소매:50억원 / 건설업:80억원 / 식품제조:120억원 등)

※동일 사업주가 다수의 사업장을 보유한 경우에도 최대 2명까지 지원

다. 중소기업/소상공인 적용 기준

- 소상공인 : 근로자수, 매출액 둘 다 소상공인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
- 중소기업 : 근로자수 또는 매출액이 동사업 소상공인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
  예시) 종업원수는 4명이면서 매출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음식점은 '중소기업'으로 지원
- 적용기준은 신청시 자료 기준이며 이후 변동분(근로자수)은 미만영

라. 지원 제외 대상(공통)

- 자본잠식상태 등 사업의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장
- 근로자파견 및 공급업체(용역업체 등 소속근로자를 다른 사업장에 근무시키는 경우)
-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미가입 및 상습 임금체불 기업
- 대표자의 4촌 이내 혈족을 참여근로자로 신청하는 기업

- 부당한 업무지시, 폭언 등으로 참여자의 중도포기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
- 중대 산업재해 발생일로부터 1년 미만인 사업장
- 기존 근로자의 초임 급여보다 낮게 책정하여 근로계약 체결한 사업장
- 기타 신중년 중소기업·파트타임 지원사업의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기업 등

㉮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, 변호사/회계사/병원/약국 등 전문직종, 금융/보험 관련 업종 등

㉯ 비영리기업/단체/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

※ '사회적기업 육성법'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 기업, '협동조합 기본법'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,'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'제2조에 따른 조합은 지급 대상

㉰ 유흥, 불건전, 도박 및 사행성, 불건전, 점술, 오락장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

마. 참여 신중년근로자 자격요건(※모두 충족)

① 사업참여 신청 업체에 신규 채용된 신중년 근로자

- **자격 요건 : 만40세 이상 만65세 미만이며, 2023. 2. 21. 이후 입사자**

② 참여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가 포항시인 자

【지원제외 참여 근로자】

- 전년도 동사업 참여근로자가 전년도와 동일한 업체에 입사하여 신청하는 경우
- 「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-자치단체 합동지침」을 참고하여 직접일자리사업 중복 참여 및 반복참여자*는 배제

  ***참여 신청자가 최근 3년 중 2년 이상 정부의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이후 1년간 사업 참여 제한, 최근 2년 중 1년 이상 참여 시 1년간 후순위로 선발, 일모아시스템을 활용하여 중복·반복 참여 여부 확인**

- 정부·지자체·기관 등의 타 재정지원 사업에 중복 참여(수혜) 자
  (참여기업이 별도 선발·관리하는 인턴 및 기타 유사한 형태 사업에 선발중인 자)
- 당해 사업체에 채용되어 실제 근무 중이거나 이전 근무했었던 자
  ※ 단, 1개월 이내로 일용직과 단시간 근로로 근무한 경우에는 참여 가능
- 사업주(대표)의 배우자,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 관계에 있는 자
-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
  ※ 단, 고용보험법 적용 대상인 거주(F-2), 영주(F-5), 결혼이민자(F-6)는 가능

지원내용 및 지원조건

○ **지원내용** : 신중년(만40세 이상~만65세 미만) 인력을 **신규 채용(23.2.21. 이후)**하는 포항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채용근로자 인건비 일부 지원

중소기업

- 지원 내용
  - 채용근로자 월급여의 40% 지원, 최대 월70만원, 업체당 최대 3명 지원
  - 지원기간 : 23.2.21. ~ 23.11.30.(최대 9개월)
- 지원 조건
  - 채용근로자 1인당 연 2,400만원(세전) 이상 급여 지급
  - **법정 사회보험 가입** 및 근로기준법 준수
  - 월 급여의 60%이상 사업체에서 부담 필수
  -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

소상공인

- 지원 내용
  - 채용근로자 월급여의 60% 지원, 최대 월50만원, 업체당 최대 2명 지원
  - 지원기간 : 23.2.21. ~ 23.11.30.(최대 9개월)
- 지원 조건
  - 최저시급('23년 기준 9,620원) 이상 지급, 주당 25시간 이상 근무
  - **법정 사회보험 가입** 및 근로기준법 준수
  - 월 급여의 40%이상 사업체에서 부담 필수

◈ 4대 보험 가입대상

- ㅇ 국민연금 : 당연 적용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 (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제외)
- ㅇ 건강보험 : 근로자(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제외)
- ㅇ 고용보험 : 실업급여는 65세 미만 근로자
- ㅇ 산재보험 :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

○ **지원규모** : 신중년 근로자 64명 정도 (중소기업 38명, 소상공인 26명)

지원대상 선정

○ 사업 신청 접수일 이후 사업비 소진시까지 모집(선착순)

○ 지원 대상에 부합하고 **결격 사유 없을시 선정 및 통보(수시)**

○ 신청서류 및 증빙자료가 미흡한 경우, 보완 완료 후 접수 가능

(※다만, 행정업무 소요기간으로 인해 신규인력 '사회보험 가입자 명부' 미반영시 접수 순위는 유지하되, 가입 확인 후 선정 통보)

○ 선정 이후 지원사업 포기, 지원중지, 환수 등으로 사업비 잔액 발생시 사업비 범위 내에서 후순위 접수 업체 추가 선정 ※지원한도 축소 가능

지원금 지급

○ 지급방법

- 업체가 인건비 선 지급 후 진흥원에 지원금 신청시 사업체 계좌로 지급
- '23. 2. 21. 이후 채용 인력에 대해 인건비 소급 적용 지원(증빙 제출시)
- 최초 신청은 근로자가 1개월 만근 후 신청 가능
- 신청 및 지급시기 : 해당기간 익월에 신청

※사업 마감으로 인해 10~11월분 인건비 지원금은 반드시 12월 5일까지 신청

구분	지급 일정		비고
인건비 해당 월	2월 21일~9월분	10~11월분	• 12월 5일 전까지 급여이체 완료 요청 • 기한 내 미신청시 지원금 지급이 제한 될 수 있음
지급시기	11월	12월	

○ 참여자 관리 및 지급 제한

- 일모아시스템에 참여자 등록 및 중복수혜 방지
- 사업기간 중 참여근로자 고용 유지 확인 후 지원금 지급
  ※포항시에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한 확인 요청
- 사업장 가동 및 재직확인을 위한 기업현장 방문(연1회 이상)
  ※불시 현장점검 실시, 지원근로자 3회 이상 사업장내 부재시 지원 중지
- 취업 근로자 중도 퇴사 등 변경사항 발생시 7일 이내 운영기관에 통보
- 채용일 이후 1개월 만근을 채우지 못한 중도 퇴사자는 지원금 미지급
-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부정 수급하는 경우 환수 및 향후 사업에서 배제

근로자 변경 및 추가 신청

○ **참여 근로자 변경 신청 및 승인**

- 참여근로자의 중도 퇴사시 신규 채용근로자로 변경 신청 가능
- 업체별 변경 신청에 대해 일괄 승인하며 변경 근로자 입사일 기준 소급 지원
- 참여근로자 지원한도 범위내 신청기업의 경우 근로자 추가 신청 가능

3 신청 및 문의

○ **모집기간** : 2023. 10. 18.(수) ~ 예산 소진시 까지

○ **신청방법** : 방문 및 우편접수

- 진흥원 홈페이지(www.gepa.kr)에서 서식 내려받아 작성 후 제출

○ **접 수 처**

-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859 2층, 경북경제진흥원 동부지소

○ **신청문의** : 054-612-2978 신중년 중소기업·파트타임 지원사업 담당

○ **제출서류** ※제출 서류는 반환 요청 불가

<사업 신청시 제출서류>

1. 「신중년 중소기업·파트타임 지원사업」 참여신청서 **【서식1】**
2. 제외대상 여부 확인서(대표자) **【서식2】**
3. 참여자 서약서(대표자, 근로자) **【서식3】**
4. 개인정보 수집·이용,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제공 동의서(근로자) **【서식4】**
5. 업체 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(사업자) **【서식5】**
6. 사업자등록증 사본
7. 대표자 본인 가족관계증명서〈가족 채용 여부 확인〉
8.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※신청일 기준 10일 이내 발급분
9. 사업자-근로자 간 근로계약서
10. 근로자 주민등록등본(주민번호 전부표시) ※신청일 기준 10일 이내 발급분
11. 국세·지방세 납세증명서
12. 2022년 제무제표 또는 2022년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
13. 외국인 등록증 사본(외국인 근로자에 한함)
14. 기타 진흥원에서 요청하는 서류(필요시)

<지원금 지급 신청시 제출서류> ※선정시 분기별 신청

1. 지원금 지급 신청서(분기별)
2. 인건비 지급관련 증빙자료
   - 매월 급여명세서 및 출근부(시간제 근로자인 경우)
   - 인건비 지급 이체확인증(은행날인)
3. 사업주 통장사본 외 요청자료

붙임 1. 업종별 중소기업 규모 기준

■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[별표 1] <개정 2017. 10. 17.>

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(제3조제1항제1호가목 관련)

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	분류기호	규모 기준
1. 의복,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	C14	평균매출액등 1,500억원 이하
2. 가죽, 가방 및 신발 제조업	C15	
3. 펄프,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	C17	
4. 1차 금속 제조업	C24	
5. 전기장비 제조업	C28	
6. 가구 제조업	C32	
7. 농업, 임업 및 어업	A	평균매출액등 1,000억원 이하
8. 광업	B	
9. 식료품 제조업	C10	
10. 담배 제조업	C12	
11. 섬유제품 제조업(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)	C13	
12.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(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)	C16	
13. 코크스,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	C19	
14.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(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)	C20	
15.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	C22	
16. 금속가공제품 제조업(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)	C25	
17. 전자부품, 컴퓨터, 영상,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	C26	

18.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	C29	
19.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	C30	
20.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	C31	
21. 전기, 가스,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	D	
22. 수도업	E36	
23. 건설업	F	
24. 도매 및 소매업	G	
25. 음료 제조업	C11	평균매출액등 800억원 이하
26.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	C18	
27.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	C21	
28.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	C23	
29. 의료, 정밀,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	C27	
30. 그 밖의 제품 제조업	C33	
31. 수도, 하수 및 폐기물 처리, 원료재생업 (수도업은 제외한다)	E (E36 제외)	
32. 운수 및 창고업	H	
33. 정보통신업	J	
34.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	C34	평균매출액등 600억원 이하
35. 전문,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	M	
36. 사업시설관리,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(임대업은 제외한다)	N (N76 제외)	
37.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	Q	
38. 예술,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	R	
39. 수리(修理)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	S	
40. 숙박 및 음식점업	I	평균매출액등 400억원 이하
41. 금융 및 보험업	K	
42. 부동산업	L	
43. 임대업	N76	
44. 교육 서비스업	P	

비고

1.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「통계법」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.
2. 위 표 제19호 및 제20호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용 신품 의자 제조업(C30393),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(C31202)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,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(C31322)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,500억원 이하로 한다.

붙임 2. 업종별 소기업 규모 기준

■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[별표 3] <개정 2017. 10. 17.>

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(제8조제1항 관련)

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	분류기호	규모 기준
1. 식료품 제조업	C10	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
2. 음료 제조업	C11	
3. 의복,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	C14	
4. 가죽, 가방 및 신발 제조업	C15	
5. 코크스,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	C19	
6.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(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)	C20	
7.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	C21	
8.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	C23	
9. 1차 금속 제조업	C24	
10. 금속가공제품 제조업(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)	C25	
11. 전자부품, 컴퓨터, 영상,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	C26	
12. 전기장비 제조업	C28	
13.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	C29	
14.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	C30	
15. 가구 제조업	C32	
16. 전기, 가스,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	D	
17. 수도업	E36	
18. 농업,임업 및 어업	A	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
19. 광업	B	
20. 담배 제조업	C12	
21. 섬유제품 제조업(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)	C13	
22.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(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)	C16	
23. 펄프,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	C17	
24.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	C18	
25. 고무제품,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	C22	
26. 의료, 정밀,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	C27	
27.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	C31	
28. 그 밖의 제품 제조업	C33	
29. 건설업	F	
30. 운수 및 창고업	H	
31. 금융 및 보험업	K	
32. 도매 및 소매업	G	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
33. 정보통신업	J	
34. 수도, 하수 및 폐기물 처리, 원료재생업(수도업은 제외한다)	E (E36 제외)	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
35. 부동산업	L	
36. 전문·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	M	

37. 사업시설관리,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	N	
38. 예술,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	R	
39.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	C34	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
40. 숙박 및 음식점업	I	
41. 교육 서비스업	P	
42.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	Q	
43. 수리(修理)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	S	

비고

1.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「통계법」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.
2. 위 표 제27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(C31202)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,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(C31322)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.